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 8. 21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0. 8. 31

다. 상 정 일 자 : 2000. 8. 31 (제8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나. 개정사유

- 2000. 1. 28 법률 제6234호로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부설 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등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함.

다. 주요내용

- 법 19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노외 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의 감액 범위를 동 조례 제21조 제2항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1/2 이내로 정하고,
-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건축비의 경우 당해 공영 노외 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되는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 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물가 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근성)

-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안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조례규칙 심의를 거치는등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5. 토론요지

“ 생 략 ”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

첨 부 : 화순군주차장조례증개정조례안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중 “법 제17조 제1항”을 “법 제7조 제1항”으로 하고, 제2호중 “법 제12조 제2항”을 “법 제12조 제1항을 하며, 제3호중 “법 제19조의 3 제1항”을 “법 제19조 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중 “법 제12조 제2항”을 “법 제12조 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중 “법 제12조 제2항”을 “법 제12조 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중 “법 제12조 제2항”을 “법 제12조 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가”목 “나”목은 삭제한다.

1. 당해 건축물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이내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법 제19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자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 ② 법 제19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

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제22조 중 “별 제19조 3”을 “법 제19조 2”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용어정의) 이 조례가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공영주차장”이라 함은 <u>법제17조 제1항</u> 및 <u>법제12조 제1항</u>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p> <p>2. “민영주차장”이라 함은 <u>법제12조 제2항</u> 규정에 의하여 군수 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p> <p>3. “조업주차장”이라 함은 <u>법제19조의 3 제1항</u> 규정에 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부설 주차장을 말한다.</p>	<p>제3조(용어정의)----- -----</p> <p>1. ----- <u>법제7조 제1항</u>----- ----- -----</p> <p>2.-----<u>법제12조 제1항</u>----- -----</p> <p>3. -----<u>법제19조 제2항</u>----- -----</p>
<p>제14조(주차장의 설치기준) <u>법제12조 제2항</u>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설치 할 수 있는 민영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14조(주차장의 설치기준) <u>법제12조 제1항</u>----- ----- -----</p>
<p>제15조(주차장의 설치심의등) <u>법제12조 제2항</u>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p> <p>1. 신청지역의 토지이용 현황</p> <p>2. 당해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p> <p>3. 주차수요의 장기예측</p>	<p>제15조(주차장의 설치심의등) <u>법제12조 제1항</u>----- -----</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제16조(주차요금) <u>법제12조 제2항</u>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당해 주차장 관리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p>	<p>제16조(주차요금) <u>법제12조 제1항</u>----- ----- -----</p>

현행	개정안
<p>제19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생략)</p> <p>1. 당해 건축물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거리</p> <p>가. 직선거리 : 300m이내 나. 도보거리 : 600m이내</p>	<p>제19조(부설주차장의인근설치)①(현행과 같음)</p> <p>1. 당해 건축물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이내</p> <p>가. (삭제) 나. (삭제)</p>
<p>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등) ①영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부설주차장 설비비용의 총액 :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 ×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p> <p>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 : 무상사용노외주차장 총설치비 : 주차구획수</p> <p>3. 무상사용 노외주차장 총 설치비 : 토지가액 + 건축비</p>	<p>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법 제19조 제6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p> <p>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p> <p>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p> <p>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p>

현 행	개 정 안
<p>4. 토지가액 : 다음 각 목중 낮은 가액</p> <p>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p> <p>나.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p> <p>5. 건축비 설계도서에 표시된 금액</p> <p>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경우에 따라 20% 범위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 할 수 있다.</p> <p>1. 법 제1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한 경우</p> <p>2. 교통상황,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p> <p>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p> <p>② 법 제19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p> <p>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p> <p>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p> <p>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p> <p>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p> <p>① 법 제19조의 3 규정에 의한 조업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위치는 조업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도시미관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시에 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p> <p>(개정 97. 3. 21)</p> <p>② 제1항의 조업주차장설치는 건축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p>제22조(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p> <p>① 법 제19조의 2 ----- ----- ----- ----- ----- -----</p> <p>② 제1항의 조업주차장설치는 건축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